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면목3·8동 44-6번지 외 4필지 일대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 또는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0. 07. 16. ~ 2020. 07. 31.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상봉로 18 우리식당(면목동 44-17번지)]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라.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외 4필지 일대
 - 3) 시행면적 : 693.6㎡
 - 3) 사업시행자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창기)
 - 4)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 5)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 공동주택 1개동 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6) 관계도서 : 중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소에 비치
3.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과(☎2094-2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람의견서 서식 1부

공 랑 의 건 서

사 업 명 및 사 업 개 요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 대지위치 :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외 4필지(시행면적 : 693.6㎡)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 공동주택 1개동 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 랑 기 간	2020. 07. 16. ~ 2020. 07. 31.	
공 고 명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공고	
의 건 제 출 인	성 명	
	물건지 지번	
	주 소	
	연 락 처	
의견 내용		

2020. . .

의견제출인

(인) 또는 서명

중 랑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78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개정하고 구청 정기주차권이 타 자치구 및 공영주차장 급지 요금에 비해 저렴하여 주차요금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권요금 개정(안 제5조 제1항)

- 일반주차요금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 →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

- 월 정기주차권 : 20,000원 → 40,000원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안 제6조 제호)

- 주차권 교부 →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8월 0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우 : 02043, 전화 : 02)2094-0327, FAX : 02)490-4329, E-mail : 20180115060019@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02-2094-03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78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면제대상 및 감면대상을 상세히 규정하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방법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면제대상 개정(안 제3조)
- 나.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 삭제(안 제4조제3호)
- 다. 전기자동차 충전 목적인 경우 주차요금 감면대상 신설(안 제4조제6호)
- 라. 주차요금 감면 적용 방법 신설(안 제4조)
- 마.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조항 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8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우 : 02043, 전화 : 02)2094-0327, FAX : 02)490-4329, E-mail : 20180115060019@jn.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02-2094-03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